
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손해평가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제7항 신설).
-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, 재해 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(안 제11조의 8제1항 후단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안 제11조제7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손해평가에 대한 ‘검증조사’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‘검증조사’라는 표현은 법령 체계상 일반화된 용어나 정의된 개념으로 보기 어렵고 자칫 그 의미가 불명확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음.

예컨대 「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법」 제17조¹⁾는 ‘손해평가의 검증’과 ‘조사’를 구분하여 ‘검증을 위하여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’고

1) 「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법」 제17조(손해평가의 검증 등) ① 보험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의 검증을 위하여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 결과가 손해평가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.

규정하고 있는 바, 법문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검증(목적)과 조사(수단)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- 다음, 안 제11조의8제1항 후단은 보험가입자가 ‘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하였던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 및 「보험업법」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’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‘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 및 손해사정사’라는 표현은 문법상 병렬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마치 모든 대상의 교체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.

이와 같은 표현은 수범자에게 불필요한 혼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, 법문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‘또는’으로 수정하여 세 대상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든 개별적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
- 다음,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평가 절차에 관한 새로운 제도로써 ①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(안 제11조제7항 신설)와 ② 보험가입자의 손해평가인 교체 요구권(안 제11조의8제1항 후단 신설)을 도입하는 내용임.

그런데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손해평가 절차가 법 시행 이후 새로 개시된 절차에 한하여 적용되는지, 또는 시행일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절차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법문상

명확하지 않음.

적용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시행 전에 종료된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 검증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, 또는 진행 중인 평가 절차에서 교체 요구가 가능한지를 두고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부칙에서 해당 조항들이 시행 이후 새로 개시되는 손해평가 절차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
- 위 사항들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.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11조(손해평가 등)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<u>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를</u> 실시할 수 있다.	제11조(손해평가 등)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<u>손해평가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</u> 실시할 수 있다.
제11조의8(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)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.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하였던 <u>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 및 「보험업법」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</u>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	제11조의8(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)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.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하였던 <u>손해평가인, 손해평가사 또는 「보험업법」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</u>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부 칙	부 칙
<u>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	<u>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 <u>제2조(적용례) 제11조제7항 및 제11조의8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손해평가 절차부터 적용한다.</u>

(전문위원 김 성 완)